

법무법인(유) 지평 뉴스레터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 Law and Regulation

### 러시아

#### 정부정책

##### ▶ 러시아 장기거주증 유효기간 폐지

[러시아 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57-FZ호) 2019. 8. 2.]

러시아에 유효기간이 없는 장기거주증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 이전에 장기거주증을 취득한 외국인/무국적자는 기존 장기거주 유효기간(최대 5년) 내에 러시아 내무부 지부에서 유효기간이 없는 장기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특별투자계약(SPIC 2.0) 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최종 서명

[특별투자계약 규제 관련 러시아 산업정책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90-FZ호) 2019. 8. 2.]

푸틴 대통령이 특별투자계약(SPIC 2.0) 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에 최종 서명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특별투자계약의 계약기간이 500억 루블 미하 투자 시 최대 15년, 500억 루블 이상 투자 시 최대 20년으로 변경되며, 특별투자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 절차가 도입됩니다. 또한, 계약기간 중에는 특별투자계약 이행 목적으로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습니다.

##### ▶ 의료기기 환체어 제품표시제도 시행 실시

[러시아 내 의료기기 환체어 제품표시 및 유통 모니터링 제도 시행 실시에 관한 총리령(제1028호) 2019. 8. 7.]

2019년 9월 1일부터 2021년 6월 1일까지 러시아에서 의료기기 환체어에 대한 제품표시제도가 시행 실시됩니다.

##### ▶ 미네랄 워터 및 식수 제품표시제도 시행 실시

[러시아 내 미네랄 워터 및 식수 제품표시제도 시행 실시에 관한 총리령(제1001호) 2019. 8. 27.]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러시아에서 미네랄 워터 및 식수에 대한 제품표시제도가 시행 실시됩니다.

### 회사

##### ▶ 중소기업에 대한 최소발주량 상향 조정

[중소기업의 물품, 용역, 서비스 조달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연간 발주량 및 해당 발주량 정산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001호) 2019. 8. 1.]

2020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최소발주량이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연간 발주량이 연간 발주계약 총액의 18%에서 20% 규모로 증대됩니다.

### 조세회계

##### ▶ 특별투자계약(SPIC) 당사자를 위한 세제혜택 규정

[세법 제1편 및 제2편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69-FZ호) 2019. 8. 2.]

특별투자계약(SPIC) 당사자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가 규정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특별투자계약(SPIC) 당사자에 대하여 연방정부 귀속분 법인세율 0% 및 인하된 주정부 귀속분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특히 SPIC를 통해 생산된 상품이 매출 대비 수익률 90% 요건을 달성한 경우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제공됩니다.

### 금융

##### ▶ 외환수익 본국송금 의무의 단계별 폐지

[외환규제 및 외환감독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65-FZ호) 2019. 8. 2.]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수출거래대금 결제 시 거주자에 대한 외환수익의 본국송금 의무가 단계별로 폐지됩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비원자재 상품 수출 시 거주자의 외환수익 본국송금 의무가 폐지되며 원자재(석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석탄, 금속폐기물 및 고철, 보석 등) 수출의 경우 거주자의 외환수익 본국송금 의무가 단계별로 폐지됩니다.

### 노동

##### ▶ 2020년 1월 1일부 월 최저임금 확정안 제출

[최저임금에 관한 연방법률 제1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2019. 8. 16.]

러시아 노동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월 최저임금을 12,130루블로 확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러시아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전년도 상반기 러시아 전체 근로자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매년 확정됩니다. 참고로 2019년 월 최저임금은 11,280루블입니다.

### 행정

##### ▶ 제품 품질 및 안전 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안 제출

[행정위반에 관한 연방법률 제3,5조 및 제14,43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2019. 8. 5.]

제품 품질 및 안전 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생산자 및 판매자의 기술 규정 위반행위로 인해 개인의 생명/건강 침해, 개인/법인의 재산상 손실 및 자연환경훼손이 초래되는 경우 생산자 및 판매자에 대한 과태료가 과거 60만 루블에서 100만 루블로 인상되었으며,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전년도 매출액의 3% 수준(최대 200만 루블)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유) 지평 러시아 · 중앙아시아팀

#### 러시아 모스크바 사무소

이승민 선임외국변호사(러시아) · 모스크바 사무소장

(+7-495-795-3268, smlee@jipyong.com)

#### 본사 러시아 · 중앙아시아팀

류혜정 파트너변호사 · 본사 팀장

(02-6200-1722, hjryu@jipyong.com)

### 지평 뉴스레터

#### 뉴스레터 신청 | 해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